

우리나라 국적법과 재CIS 한인

노 영 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

1. 국적 제도의 의의

- 국적은 국가와 개인간의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법 개념.
- 국적은 시민권, 공민권과 대체로 같은 뜻으로 쓰이나, 여권, 호적, 영주권 등과는 다름.
- 국적은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 성립 이후 형성된 제도로 초기에는 국가가 恩賜로서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국적은 인권의 일종으로 이해되기 시작함.
그러나 선천적 취득(출생)은 여전히 국가의 은사이고, 개인의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후천적 취득(혼인, 입양, 인지 또는 귀화 등)에 관한 것임.
유의할 것은 후천적 취득사유 중 다른 것들이 私法상의 섭외적 신분관계를 계기로 파생적으로 국적변동이 일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귀화는 국적취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公法상의 문제로 여전히 각국은 귀화신청자에 대하여 귀화허용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용 여부는 국가의 전적인 재량행위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귀화요건에 대하여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음.
- 국적은 국제법 관계는 물론 국내법 관계에서 개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으로 모든 것이 그 국가의 국적보유 여부(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짐.
- 각국은 국적에 관한 국제법상의 기본원칙(국적유일의 원칙)과 실정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국의 국적제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국가간의 국적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무국적 또는 이중국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자체는 국적유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은 이렇게 발생하는 국적저촉 문제를 자국 국내법을 조정하거나 해당국과의 양자조약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 어떤 개인이 특정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며, 여하한 다른 관계국의 국적법은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음. 이는 바로 국가주권(對人高權)의 원칙상 당연한 것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재중 및 재CIS 한인

에 대하여 상대국인 중국과 구소련(현재 CIS 각국)이 그들의 국적법을 적용한 결과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여 재중 및 재CIS 한인을 모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로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또한 일면 대한민국이 전세계 600만 해외교포의 조국이라고 자처해 왔던 결과는 반대로 이들을(약 270만) 배척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단결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음. 주권의식과 민족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는 정부와 지도자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됨.

2. 재CIS 한인

- 대륙의 한인 : 1860년대부터 연해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주였으나 1900년대 들어서는 항일독립운동을 위하여 이주가 주가 되었음. 이러한 이주는 1920년대 말 ~ 1930년대 초 소련이 연해주의 국경을 봉쇄할 때까지 이루어졌음. 이 대륙의 한인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였음. 강제이주 당시 대륙의 한인의 수는 약 20만이었으며, 그 중 지도자급인 2만명은 체포 처형되었으며, 강제이주된 자는 18만명임. 이들은 소련의 1924년 국적법에 의하여 소련공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주되었으며, 특히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공민증도 없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군대도 갈 수 없었음. 소련 붕괴 후 CIS 각국의 국민으로 분해되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강제이주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입법이 있었고,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각국에서의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인하여 다시 러시아의 연해주로 재이주하려는 한인이 많으나 관련 국가들의 정책적 또는 현실적 장애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은 매우 불안한 상태임.

- 사할린 한인 : 주로 1937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령에 의하여 남사할린(북위 50도 이남의 지역으로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할양받아, 1945년 제2차 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하여 소련이 재할양받을 때까지 일본의 영토로 있었음)으로 강제징용 당했다가 패전시 일본의 고의적으로 한인을 방기하고 일인만을 소개시킴으로써 소련의 영토에 남게 되었음. 소련은 이들을 처음에는 무국적자로 처리하려다가 1957년경 사할린에 파견된 북한요원의 선전에 의하여 북한국적 취득을 허용함과 함께 소련국적의 취득도 허용하였는데, 처음에는 북한국적이 선호되었으나 나중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후로는 북한국적을 포기하고 소련국적으로 변경하였음.

1990년을 전후하여 사할린 한인 모국방문 사업에 의하여 한국을 일시방문하거나 영주귀국하였음. 이는 일본이 도덕적 역사적 인도적 책임에 의하여 예산의 상당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진행된 것인데, 이때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강제징용과 방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자제하였음.

- 북한출신 한인 : 이는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한 이래 노동계약

자, 소련군 출신자(간부수출), 유학생 등 다양한 부류의 자들로 구성되나 이들은 대부분 대륙의 한인들과 섞이어 살아왔음. 이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은 소련국적을 취득하였다.

- 한국은 한소수교시 이들에 대하여 주권국가로서 한국국적법을 적용하여 이들의 한국국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들을 소련국적자와 무국적자로 처리하였고, 또 소위 재외동포법의 제정시에도 이들을 동법상의 재외동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반민족적, 반주권적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우리 정부가 제대로 했다면, 한소수교 준비과정에서 이들의 한국국적 보유여부를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한국국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련국적과의 이중국적 상태가 발생하므로 한소수교시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조약을 체결하여 정리하였어야 함.

'재외동포법개정'을 둘러싼 국회, 정부부처, 법개정대책협의회의 쟁점사항 정리보고

-
- 수 신 :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 작 성 :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운영위원회 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집행위원
 - 작성일 : 2002년 3월 1일(금)
-

<글 실는 순서>

1. 재외동포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
2. 쟁점사항 정리 - 국회, 국가인권위, 정부부처, 대책위
3. 요약 정리

1. 재외동포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 (1999년부터 2002년 3월까지)

- ▷ 1998년 8월 재외동포특별법 법무부 입법추진
- ▷ 1998년 12월 24일 법무부 수정안(과거국적주의) 국회 상정
- ▷ 1999년 9월 2일 법 제정, 12월 법 시행
 - 1999년 8월 23일, 국내 재중동포 3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 64개 범시민단체 및 각 국 재외동포단체 법제정 반대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 2000년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 2000년 11월, "재외동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공청회(KIN)
 - 「재외동포법에 관한 각 국 재외동포들 300명 의식조사」
- ▷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판정' 및 '2003년 12월 31일 시한의 잠정적용명령'
- ▷ 2001년 12월, 여야 의원(이주영, 송석찬) 개정입법안 국회 상정
- ▷ 2001년 12월 13일,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결성식
- ▷ 2001년 12월 18일,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외교통상부, 법무부 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 ▷ 2001년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전달
- ▷ 2002년 02월 19일,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현정기념관
- ▷ 2002년 02월 27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 회장 이오영), 협통주의에 입각한 개정원칙 국회 및 정부에 촉구

2. 쟁점사항 정리 - 국회, 국가인권위, 정부부처, 대책위

- 현행 재외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현행법 제2조 제2호의 개정, 제10조 제5항의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중동포들의 현행법 제2조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헌법소원청구에 대해서,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3조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판정과 함께, 2001년 8월 말 기준, 재외국민 10,532명, 외국국적동포 13,132명, 총 23,664명의 현행법 적용자들에 대한 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여, 「잠정적용명령」을 판결했음.
- 현행법의 제2조의 재외동포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쟁점이 되는 것은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규정임. 이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난 동포들과 그 후손인, 재중동포 220만명, 재CIS동포 약 50만, 재일동포 약 40만명 등 약300만 명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국회, 국가인권위, 정부부처, 재외동포단체,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의 입장은 각각 다음과 같음.

1) 국회의 대응

- ① 2002년 12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이 각각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② 2002년 2월,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임종훈)의 두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함.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임.
- ③ 대책위 검토 결과, 두 안은 모두 일본의 20만 무국적 재일동포(朝鮮籍) 등을 또다시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며, 특히 이주영안은 재외동포의 취업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문제임.
- ④ 특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임종훈)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적절한 검토결과 보고서라 할 수 없음.

2) 국가인권위의 의견

- ① 2001년 12월 21일, 국가인권위는 두 의원안에 대해, 혈통주의 규정은 국제법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일본의 무국적 재일동포인 '조선적'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있다는 검토의견을 법사위에 보냄.

3) 정부부처들의 대응

- ① 현행법의 입법을 주도한 정부부처(법무부, 외교통상부)는 외부 입장표명 유보해왔음.
- ② 2001년 12월 18일, 외교통상부는 법사위에 보낸 의견에서,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혈통주의 입법은 국제법에 반한다는 간단한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운영을 위한 재외동포재단 법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외국에서 거주·생활

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명백히 혈통주의에 입각해 재외동포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③ 2001년 12월 18일, 법무부는 법사위에 보낸 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두 여야의원의 개정법률안이, '혈통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인종차별적 입법임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외교적 마찰 가능성, 노동시장의 교란, 간첩 잠입 등의 안보문제, 불법체류자 양산, 중국동포 자체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음.

4) 재미동포단체들의 대응

- ① 이 법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인 재미동포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현행법이 2003년 12월 이후 자동폐기될 것을 우려하면서, 재외동포법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음.
- ② 2002년 2월 27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오영)는, 현행법은 혈통주의에 입각해 모든 재외동포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촉구하고 있음.

5)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의 입장

1) 재외동포 개념 규정에 대한 대안

- ① 현행법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자 중에서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외국민이 아닌 자")로 규정할 것.
- ② 이는 대한민국국적도 외국국적도 취득하지 못하여 거주국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무국적 상태의 재외동포'(20만 무국적 재일동포의 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정을 종합 수렴한 것임.

2) '인종주의법'이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대한 입장

- ① 재외동포는 국외로 이주·정착하면서 각종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이고, 이의 형성을 국가가 초래했으므로, 출입국과 국내의 법적지위에 있어서, 국가는 당연히 국내인과 같은 법적 혜택을 모두 부여해야 함.
- ② 다만 재외동포의 참정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유보될 수 있음.
- ③ '인종차별이란, 인종·피부색·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배척·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는데, 과거 국가가 초래하여 타의로 강제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내인의 법적지위와 함께 만드는 것으로 인종차별이 아니다. 인종차별을 말하기 위해서는, 국내인과 외국인의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④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재외동포와 국내 외국인노동자들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내인과 외국인노동자간의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함.

3)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한 입장

- ① 1999년 법제정 당시, 정부부처와 국회는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국제법 원칙을 이유로 300만 재외동포를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켰음.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전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음.
- ③ 중국정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포괄적인 화교·화인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④ 법제정 당시 국내 입법안을 미리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상대국가에 통보하여 문제를 불러일으킨 책임은 정부부처에 있음.
- ⑤ 이미 외국인이 아닌 재미동포 등 각 국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혈통주의 입법이 국제법 원칙에 반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 ⑥ 결국 중국정부 등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내는 책임집단이 외교통상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득노력이나 대응이 지금까지 없었음.

4) '노동시장 교란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

- ① 법무부와 노동부는 재중동포의 대거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교란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나 노동전문가들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임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임. (cf. 전북대 설동훈 박사의 제안)

5) '안보의 문제'에 대한 입장

- ① 안보의 문제는 충분히 기존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해낼 수 있는 문제임.
- ② 재외동포를 통제되어야 할 대상, 안보적으로 문제있는 자로 보는 것 자체가 국내인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재외동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며, 인권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법개정 반대의 명분으로 다분히 활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임.

3. 요약 정리

- 현행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규정을 무국적 재외동포들에게까지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져, 모든 재외동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재외동포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함.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안)
- 현행법 제10조 제5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있음.
(재외동포법개정대책위 안)
-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결론이고, 또한 과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님을 피력하며 제시

한 모든 논거(노동시장 교란, 안보, 국제법 원칙 등)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므로, 정부에 대해 헌법을 존중하여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촉구해야 함.

재외동포재단 현황 및 사업소개

- 결과적으로 외교마찰, 국제법 원칙, 노동시장 교란, 안보문제 등을 들어, 현행법을 폐기하려는 듯한 정부부처(법무부, 외교통상부)의 그릇된 논리와 판단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와 재외동포사회, 그리고 국내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내야 하는 시점임.
- 현재 재외동포는, 전세계 142개국에 걸쳐 600만에 달하며, 남북한 인구대비 8%에 이르고 있고, 남한 인구대비 약 12%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개념 규정의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정주국 혹은 국내정부의 정책, 법제도가 모호한 상황이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층이므로, 국내시민사회 혹은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발시켜내야함.
- 요약 정리하며, 과거 암울했던 식민시기, 숭고한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나라 헌법 근간을 일구어낸 역사의 주역들과 산증인,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폭넓게 배려하는 법으로 조속히 재탄생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개정대책위 상임공동대표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실 것을 호소함. <끝>

2002. 9. 28

강 윤 모

I. 재단현황

1. 설립현황

가. 설립목적

-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설립경위

- 95.12.18. 세계화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합의
- 96. 5. 3.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재외동포재단 설립 합의
- 97. 3.27.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
- 97. 4.27. “재외동포재단법” 발효
- 97. 7.28.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42호) 공포 및 발효
- 97.10.30. 재외동포재단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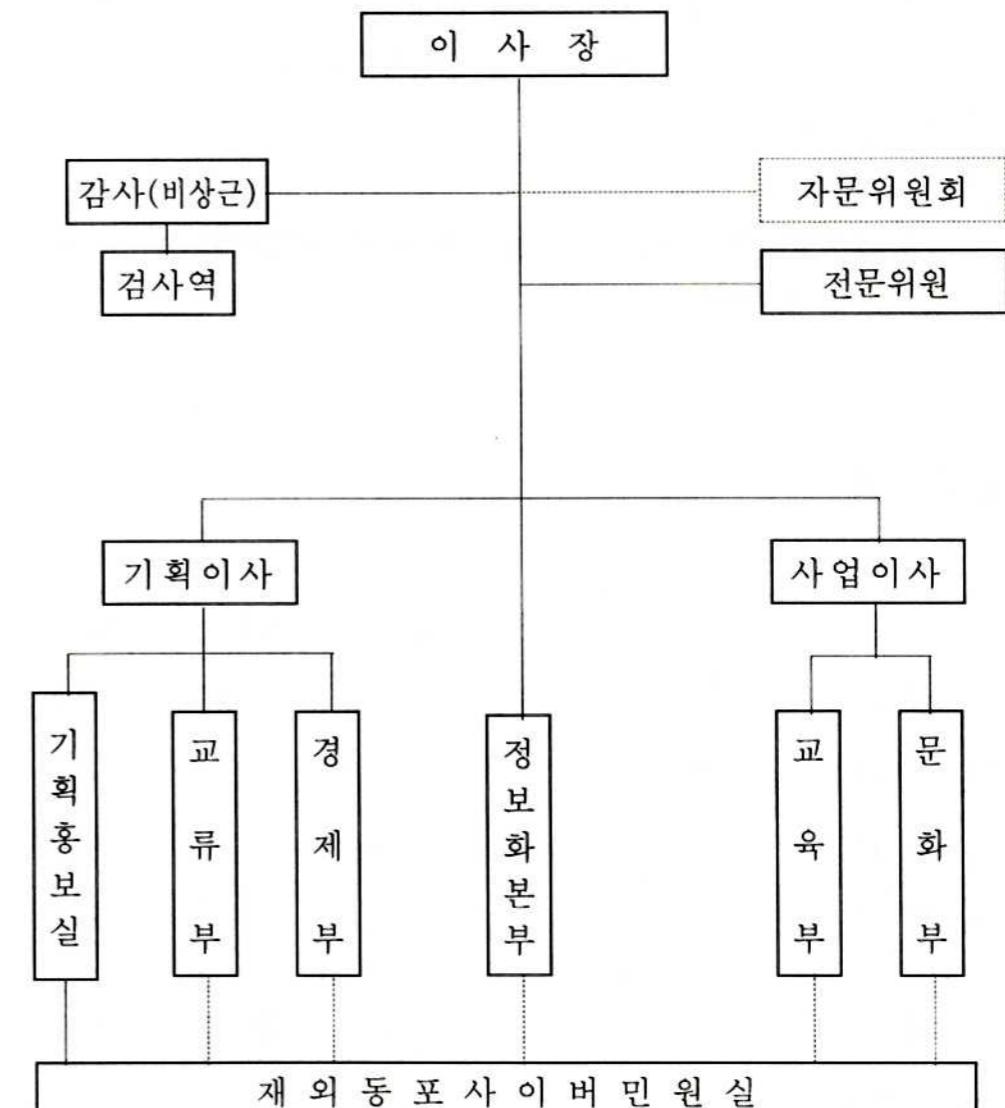
다. 사업대상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

2. 조직현황

가. 직 제 : 이사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감사(비상근) 및 1실 5부

나. 조직표



3. 인원현황

○ 현원 : 33명(파견 공무원 4명 포함)

구분	합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직제정원	39	3	33	3	-
현원	33	3	25	2	3

* 부처별 파견공무원 : 외교통상부 2명, 기획예산처 1명,
교육인적자원부 1명

* 현원에는 휴직자 1명 포함

* 사업비 계약직 : 12명

- 정보화전문인력 6명, 재외동포센터 및 한상네트워크 구축 사업 4
명, 기타 2명

4. 예산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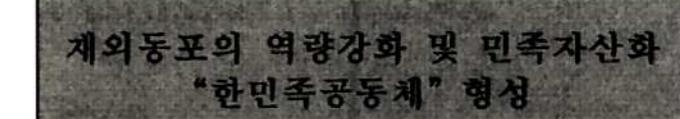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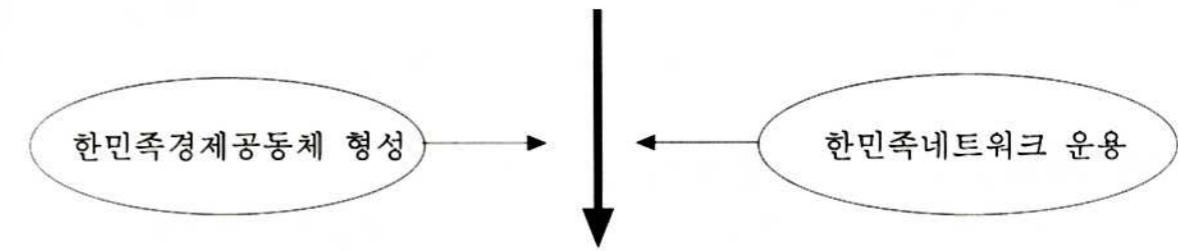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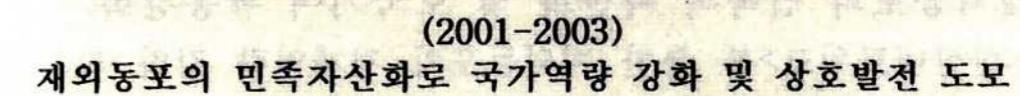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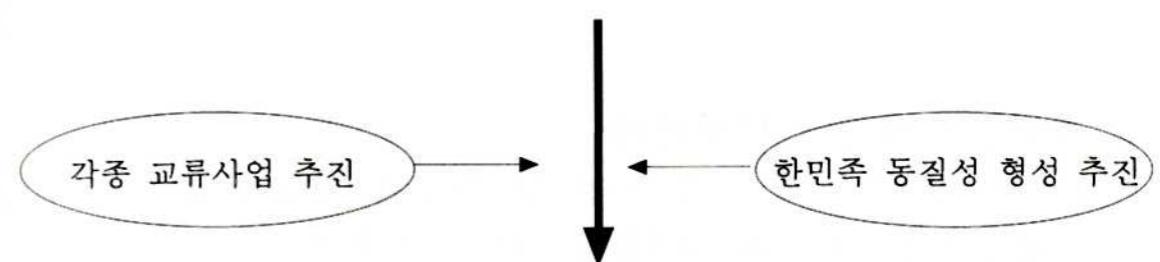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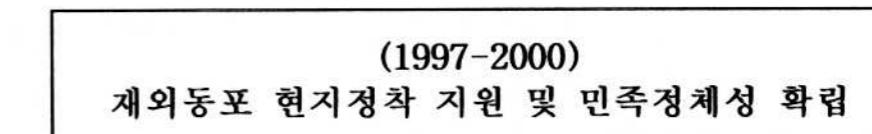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건비	2.2	8.8	7.5	8.1	9.4	8.8
경상운영비	18.2	4.2	3.5	3.8	4.6	7.0
사업비	-	88.0	86.3	72.0	72.7	98.3
재일민단 지원사업	-	-	-	84.8	84.8	84.8
계	20.4	101	97.3	168.7	171.5	198.9

* 연도별 예산은 실행예산 기준임

* '97년도 경상운영비 : 전세임차료 12.5억원, 설립비 3.7억 포함

II. 2002년도 사업추진현황

1. 사업목표 및 단계별 추진과제



2. 사업추진방향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유지·보존하면서 거주국 주류사회에 성공적인 정착 및 600만 동포가 민족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모국과 Network를 유지·발전해 가도록 다양한 동포지원사업을 추진하되, 「재외동포센터건립」 및 「한민족네트워크 운영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상(韓商)네트워크운영사업」 중점 추진

가. 재외동포사회의 역량강화

- 600만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키 위한 역동적이고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

나.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산화 및 모국기여 활동강화

-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재외동포의 경제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통한 재외동포의 구심점 확보와 이를 통한 모국과의 교류 및 투자유치 활성화

다.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 함양

- 재외동포에 대한 한글교육 및 민족문화 보급활동 강화
- 국외입양동포 및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민족정체성 함양 사업 지속 수행

라. <한민족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한민족공동체 구현 촉진

- <한민족네트워크 : www.hanminjok.net>를 통하여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강화 지원 및 모국과 재외동포, 재외동포 상호간의 사이버 가교역할 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웹사이트 개발, 운영

마. 특수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

- 중국 및 CIS지역 등 특수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
- IT연수 등 특수지역 동포사회의 자조능력 함양과 민족교육 지원

바. 재외동포사회의 자조능력 신장 지원

-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활동 강화 및 민족정체성 유지사업의 중점지원을 통한 자조능력 신장 도모

III. 세부사업 소개

1. 조사연구사업

가.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 재외동포사회 현지 실태조사 직접 실시 및 지원

나. 재외동포사회 연구기반조성사업

- 전문분야 조사연구 용역의뢰
- 관련단체 연구학술활동 지원
- 연구보고서 발간 및 외부출판 지원
- 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가 초청 교육훈련

다. 재외동포 사이버민원실 운영

- 호적 등(초)본 FAX 발급 서비스 대행
- 민원상담

2. 문화사업

가. 한민족문화제전

- 재외동포주간(10월 마지막주) 선포 계기 한민족문화제전 개최
 - 재외동포 서울예술제
 -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 미술 · 서예전
 - 한민족문화공동체 대회 등

나. 문화예술단 파견사업

- 동포 밀집지역 등 대상 문화예술단 파견(연 2~3회)
- 특수지 민족문화 보존 · 유지 활동 지원
 - 중국 · CIS 지역 대상 민족문화예술관, 고려극장 등 지원
- 한국문화용품 지원
 - 국내 제작 문화용품 구입, 지원

다. 국외입양인 초청연수 및 지원사업

- 국외입양인 모국문화 체험연수
 - 입양동포 대상 모국연수 실시(10일, 29명)
- 국외입양인 자생단체 육성 지원
 - 거주국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입양동포 단체 활동 지원
 - 특히 2003년도에는 제3회 세계입양인대회 국내 개최 지원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 홀트재단 등 국내 4개 입양단체 지원

3. 홍보사업

가. 홍보자료 발간사업

- 뉴스레터 제작
 - 자체 제작 및 외부 제작 지원
- 홍보 브로셔 및 리플렛, 제작
- KBS, “한국어방송인대회” 공동 주최
-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및 방영
 - MBC, “이홍렬의 해피통신”

나. 재외동포 언론지원사업

- 중국 · CIS지역 동포언론사 지원
- 일본 통일일보사 지원

4. 교류사업

가.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 동포사회 각종 행사 등 주류사회와의 교류사업 지원
 - 거주국내 동포 권리신장을 위한 인권활동 지원
 - 재외동포들의 자발적인 모국방문 및 국내단체와의 교류지원
-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 종합문화회관, 기념조형물 등 프로젝트성 숙원사업 지원

- 재외동포 권익신장 유공인사 초청
 - 거주국 주류사회 인사 중 재외동포 권리신장에 기여한 인사 방한초청
- 나. 한민족 공동체 구현사업
 - 세계한인회장 대회
 - 48개국 225명 참가(7.9~12)
 - 유공재외동포 모국방문초청
 -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육성
 - 차세대지도자 워크숍(15개국 31명/9.1~7)
 -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지원
 - 대한적십자사의 모국방문사업 지원
- 다. 재외동포센터 건립 촉진사업
 - 타당성조사 용역 및 홍보활동 등
 - 동포센타 건립 촉진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
- 라.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 전국사업회(회장 : 김창원) 사업 지원

5. 교육사업

- 가. 모국어 및 민족교육지원사업
 - 재외한글학교 지원(96개국 113개공관 1,923개교)
 - 한글학교 운영비 등 지원
 - 교육기자재 등 교육자료 지원
 - 중국, CIS, 중남미, 동남아지역 한글학교 대상
 - 중국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
- 나. 재외동포 장학사업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 중국 · CIS지역 장학금 지원
 - 분기별 80명(\$150/1인)
 - 모국수학 재외동포 장학사업
 - 학기별 30명 선발(2백만원/1인)

- 다.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사업
 - 재외동포대학생 모국순례연수
 - 11개국 62명(8.8~17)
 - 재외동포청소년 모국체험연수
 - 26개국 113명(8.8~17)
 - 재외동포 민족교육자 초청연수
 -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 4개국 20명(4주간)
 - 한국어 교습법 연수
 - 재외동포 사이버한국어강좌 개발 및 운영
 - 학습교재안 개발 및 웹사이트 구현 중

6. 경제사업

- 가. 한상네트워크 운영사업
 - 한상대회
 - 재외동포 700명, 내국인 300명 규모 대회 개최(10.8~10)
 - 한상네트워크 수행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
- 나. 내외동포 경제교류촉진사업
 -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지원
 -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해외한인무역협회 등
 - 재중동포 IT연수(40명, 16주)
 -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실시중
 - 재일동포 IT연수(12월 시행)
 - 재일민단과 협조하에 모집중
 -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대회(10.6~11 예정)
 - 국내외 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학술대회, 한상대회 참가

6. 정보화사업

- 가. 한민족네트워크 운영
- 나.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IV. 향후 추진 과제

1. 한민족네트워크 확대구축

-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가상모국체험공간인 'Virtual Korea', '재외동포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현지 거점운영' 등을 통해 '재외동포 네트워크 공동체' 형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10억원으로 2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
- 향후 재단의 <한민족네트워크>가 명실상부한 전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사이버 교민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 컨텐츠 신규개발 및 보완, 시스템 확대, 동포사회 정보화 환경 구축 소요예산 지원과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 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필요

2. 한상네트워크 구축

- 한상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동포 경제인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인 기업인들간의 상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 동 사업은 우선 재외동포 기업인의 경제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 후 상호 연계하여 내외 기업인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동시에 추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구

- 이를 위해 금년 10.8~10.10 서울에서 전 세계 주요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제1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경제인 DB 통합 검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이버한상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추진중임

3. 재외동포 관련 업무 추가이관

- '97년 10월 동포재단 설립이후 관련 부처와의 의견 차이로 외교통상부 등 각 정부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 중 일부만 재단으로 이관, 아직도 상당 부분의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등에 흩어져 있는 실정임
- 이는 재외동포 관련사업의 분산에 의한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요인이 되어 정치권과 재외동포사회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일원화 요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 및 제한된 재외동포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사업의 재단으로의 일원화가 필요

4. 재외동포 민원처리 문제 개선 노력

-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한 민원처리 관련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재단은 현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단의 민원업무는 단순한 민원안내와 동포들에 대한 호적 등·초본 발급 대행 서비스에 국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재외동포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 효과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 예정임

5. 재외동포센터 건립추진

- 재단은 재외동포사회에서 그간 축적된 재외동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역량을 제고하고,内外동포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다목적 재외동포 전용공간을 모국내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동포센터 건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며, IMF로 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재외동포들이 모국송금, 모국물품 구매운동 등 물심양면으로 모국을 지원한 점과 향후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감안,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센터건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협조,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6. 재외동포재단 예산 확대

- 재외동포의 교민청 설립 요청을 대신하여 설립된 재단은 설립 당시 IMF 영향에 따라 기형적인 100억원의 예산과 30여명의 인원으로 출범
- 2002년도 총사업비 98억원(재일민단지원 85억원 제외)으로 재외동포의 민족자산화 추진 및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지원 요청에 부응하기에는 절대금액 부족

- 또한 직제정원 3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규인력 33명으로는 6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역부족인 바, 재단의 신인사제도 도입시 전문 컨설팅업체인 (주)아이플래그가 진단한 정규인력 (48명) 규모로 총원 필요
-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IMF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과, 2001. 10. 5. 대통령 시정연설 언급사안인 재외동포센터 건립 및 한민족네트워크 운영 등 재외동포의 민족자산화 추진 필요성을 감안, 재외동포업무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증액 추진 예정

<각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현황>

구 분	사 업 명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단체 지원 ○ 재외동포 정기포상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한국교육원운영 ○ 재외한국학교운영 ○ 한국어능력검정사업 ○ 재외동포교육용 교과서 공급 ○ 재외동포학생 단기교육 ○ 교육정보시스템운영 ○ 구소련 및 중국동포대학생 연수 ○ 동포교육 관련 외국인교사 연수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한민족축전 ○ 한국어 해외보급사업 ○ 한글 우수성 선양 ○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대상 통일교육 실시 ○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대토론회 ○ 미주 통일문제 포럼 ○ 북방동포 사회문화 사업지원 ○ 전세계 동포언론사 통일원고 지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법률상담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독립유공자 초청 교류행사 지원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정부의 신교민정책(1995년)

■ 기 본 목 표

- 교포들이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교포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편 본국과 거주국간 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

■ 하 위 목 표

- ① 거주지에서 확고한 경제 사회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민족의 동질성과 본국과의 유대관계 지속을 위한 민족교육 중점 지원
- ③ 동포사회가 자유 민주적 가치 하에서 대동단결 할 수 있도록 지원
- ④ 동포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며
- ⑤ 해외동포 행정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동포 행정창구를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 공관으로 일원화
- ⑥ 해외동포들의 본국관련 경제활동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자료 2>

II. 재외동포정책의 변천

이 장에서는 편의상 역대 정부별 재외동포정책의 특성만을 살펴봄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외연확장과 본국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1970년대까지의 재외동포정책은 역사적인 배경상 주로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미주지역을 비롯한 서구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초기 정책은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남미지역에 대한 농업이민 등 해외이주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데올로기적 대립기를 지난 90년대 이후에 비로소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기에 우리 정부의 전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는 점을 명기해두고 한다.

1. 자유당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당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일동포를 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침예화하던 때로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그저 귀동냥으로나마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5~6만의 재미동포사회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으며, 중남미와 유럽지역에는 재외동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당 정권의 재일동포정책은 별로 커다란 것이 없었다. 북한의 재일동포 북송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59년도 말에는 재일거류민단(당시)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정부 불신임을 표명할 정도로까지 본국과 재일동포사회가 대립을 보인 적이 있었다.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재일동포정책은 우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논의된 재일동포 법적지위 협상과 지난 1957년에 정부예산사업으로 재일동포 민족학교에 대한 보조금 2만 2천불을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조총련이 동경에 조선대학을 설립하는 등 그들 식의 민족교육을 강화하는데 따른 대응적 조치 수준이었다. 당시 북한은 한국정부의 지원금의 30배에 가까운 61만 5천불을 지원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부분을 메워 경제 재건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일동포정책을 통해 추진한 북송사업으로 약 10만명에 달하는 재일동포 인적자원을 획득했다.

여기에서 잠시 북한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은 재일동포들을 정치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에 7명의 조총련 각계 대표를 참여시켜 이들을 국제무대에 등장시켜 재외동포사회에 정책적 우위를 선전하고 있다.

이어 1963년 10월에 개정한 국적법 제2조에 “그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갖는다”고 명기했으며 헌법 15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의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였으며 저들의 통일 방안 속에서도 “해외동포의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은 그 본질 면에서 정치적 선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화당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공화당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무엇보다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재일동포 법적 지위의 특성은 “영주권”과 “강제추방”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민단 단장이었던 권일(權逸)씨는 한일회담이 타결된 직후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 타결로 본국의 보릿고개만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곤욕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비장한 어조로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갈증을 본국의 경제자립으로나마 승화시키겠다는 염원이자 재일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상념을 대표하는 말이라 하겠다.

공화당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동포 영주권 신청을 재일동포 법적 지위 차원에서 민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여태껏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전환

하였다. 또한 공화당 정부는 1966년 영주권 신청운동을 통해 민단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이 불게 되자, 1979년에는 오사카(大阪) 백두학원(白頭學院)의 한국화를 실현하고 1978년에는 민단에 대한 10억엔의 지원과 함께 조총련계 모국방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여태껏 북한에 대한 수세적인 재외동포정책에서 공세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전개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의 고향애를 바탕으로 한 본국과의 교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근대화에 재일동포들을 동참시킴으로써 이들의 본국 투자가 급증했다.

우리 나라의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재일동포들의 기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는 오늘날 모국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헌신적인 동참과 더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반면 1972년 이후 박대통령의 유신통치로 인해 재일동포사회의 균열, 재미동포사회의 민주화투쟁운동을 계기로 재외동포사회에 “친한”“반한” 구도가 형성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갈등구조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무리하게 재외동포사회에 한국적 “잣대”를 강요한 측면이 있어 재외동포사회에 적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향후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수행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정당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전두환 민정당 정부는 출범 직후 “교민청” 설치를 공약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재미 반정부 인사들에 “교민청”이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재외동포와의 서먹한 분위기를 완화하고 재외동포와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길을 모색하려 했지만, 이같은 구상은 외무부의 논리적인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다만,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조항을 신설했으나, 이후 하위법에 대한 정비는 이루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 및 구소련과의 수교를 통해 비로소 재중동포와 구소련거주 동포를 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는 했으나, 다소 성급한 수교협상으로 인해 이들 동포들을 구체적인 준비없이 맞아들임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에 일정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같은 혼란은 재중동포들의 방한 러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귀빈 대접을 하다가 다음에는 한약장사로, 급기야는 외국인 불법노동자로 취급하여 재중동포사회에서 반한감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200만 재중동포도 수용 못하는 한국정부가 2,000만 북한동포와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동포들도 있었다. 이는 중국의 고위 지도층이 해외에서 화교를 접견할 때마다 거주국과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화교는 중국교민으로 인정하면서 각종 편의 제공을 공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의 수교교섭에서 재중동포의 법적지위 등 우리의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4. 신한국당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김영삼 정권은 출범 직후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견지했다. 이같은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민정부는 과거 50년의 한국사를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의욕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자 국내정치의 “개혁”을 단행했다.

재외동포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문민정부가 표방한 “신교민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신교민정책”은 정부 관련 부서가 그 동안 견지해 온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선언적으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부여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재외동포정책은 정부의 정통성 문제로 재외동포사회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폐단이 없지 않았다.

둘째, 냉전체제의 대결구도로 재외동포를 끌어나는데 노력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를 양분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셋째, 이로 인해 재외동포들이 본국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어 거주국에서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이 본래의 이주 목적대로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고 재외동포사회가 정치적 이념적 대결을 지양하고,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외동포행정의 창구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내 경제활동을 권장·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방미시 “한국인의 궁지를 가지면서 훌륭한 미국사회의 일원이 되라”고 당부했으며 캐나다 방문시에는 “여러분은 한국과 캐나다라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국이고 캐나다도 조국입니다. 한국이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됩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훌륭한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국에 두고 온 형제 부모들이 바라는 바 일 것입니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신교민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며, 현재의 국민회의 정권도 김영삼 정권 하에 만들어진 “신교민정책”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으며 재외동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통치권자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은 90년대 들어 550만 재외동포사회의 실체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재외동포사회에 통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본국민의 해외여행이 현지에서 재외동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함께 더불어 민족의 발전을 걸어질 소중한 동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S.Schecheer이라는 재미유대인 학자의 “유대인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유대인의 현지화(미국화)가 아니라 유대화이다. 그들을 미국인으로 만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미국화된 후 그들을 어떻게 유대인주의의 틀 속에 잡아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고 토로한 바대로 우리의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우리 민족으로서의 동질성(identity)유지 방안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5. 국민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자신의 오랜 해외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실질적이고 진취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을 정·부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을 의원입법할 예정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영주재외국민과 한국계외국인이 외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재외동포 등록 절차와 국내 법적 지위개선 사항은 법무부가 마련중인 특례법 등 별도의 법률에 위임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은 재외동포 관련 총괄사업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활용, 재외동포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한편, 일관된 정책수행을 위해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재경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부원장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진취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워크샵 “한국사회 소수민족 기본법도입의 필요성”

■ 발제

“소수민족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이종훈(국회정치담당 연구관, 정치학박사)

■ 토론

박천웅(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독고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양필승(건국대 교수, 엠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 위원장)

■ 주최 : KIS 추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02년 10월 19일 토요일 4시 참여연대 강당

KIS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목 차

KIS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발제문

소수민족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기본방향(이종훈 국회연구관)

토론 1

탈북주민분야 (독고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2

이주노동자 분야 (박천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토론 3

재한화교 분야 (건국대 교수, 앰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 위원장)

<참고자료 1>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참고자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KIS 준비위원회

1차 2월 9일

2차 3월 2일

3차 3월 16일

KIS 추진위원회 3월 23일

1차 추진위원회 4월 6일

2차 추진위원회 4월 27일

3차 추진위원회 5월 5일

4차 추진위원회 7월 13일

5차 추진위원회 7월 23일

6차 추진위원회 8월 10일

7차 추진위원회 8월 24일

8차 추진위원회 8월 31일

9차 추진위원회 9월 7일

10차 추진위원회 9월 14일

11차 추진위원회 10월 5일

12차 추진위원회 10월 12일

KIS 재외동포 이주사 및 정책 상반기 공개세미나

1차 미국·브라질 5월 25일

2차 독일·중국 6월 1일

3차 일본·구소련 6월 8일

KIS 각국의 재외동포정책 및 소수민족 정책관련 내부 세미나

1차 8월 10일

2차 8월 24일

3차 8월 31일

4차 9월 7일

5차 9월 14일

KIS 1·2차 워크샵

9월 28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현황

(재외동포재단 강윤모 교류부 과장, 한광수 기획홍보실 차장)

10월 19일 “한국사회 소수민족 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오늘 개최

소수민족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기본방향

이 종 훈 (국회 정치담당 연구관, 정치학 박사)

rheehoon@hotmail.com

세계적 흐름이란 말이 있다. 세계적인 유행 또는 조류를 일컫는 표현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이동, 노동력 이동만큼 이 말에 딱 들어맞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에서 유럽과 북미 그리고 대양주 국가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유럽과 북미 그리고 대양주 국가 일부는 이민을 아예 불허하거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시적인 노동력 유입도 통제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제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근대 이후 줄 곳 이민송출 국가였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민은 권장사항이었다. 요즘도 연간 1만 명을 넘는 숫자가 이민을 떠난다. 인구도 많을뿐더러 경쟁이 심한 한국 보다 외국에서 좀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즘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을 떠나 교육 목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역사를 반영하여 한국은 해방 이후 이민은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이민은커녕 난민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아주 제한적으로 국제결혼한 경우에 한정하여 귀화를 허용했을 뿐이다. 근대화 초기에 유입된 화교에게만 장기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이다.

이런 한국에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이다.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행을 원하는 제3세계 노동력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기업의 구조적 위기, 곧 고임금 저생산성에 따른 이윤 감소, 3D 업종 기피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연수생 제도 도입과 재중동포 친지방문 허용은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선진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다. 언제나 외국으로 이민 또는 노동력을 내보내기만 하던 국가, 지금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내보내는데 관심이 많은 국가가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달갑지 않은 손님의 정착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불법체류, 늘어나는 국제결혼과 정착에 대한 대응책 미비는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사회의 준비 부족도 문제지만 정책 당국의 준비 부족도 문제인 상황,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문제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여전히 가야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을 계속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 내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유감스럽게도 정해져 있다. 계속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 경제,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농촌 지역 총각도 외국인 신부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못사는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로 돈벌이를 나서는 일은 이제 너무나 보편적인 세계적 조류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어디 그 뿐인가? 제3세계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한국 정부의 힘은 더 제한적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만큼 받아들이고 최대한 불법체류를 막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일에 열심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통제 위주의 정책이 놓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대한 불법체류를 막으려 하다 보니 도망 다니는 불안한 처지의 외국인은 악덕 기업주의 손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기 일쑤이다. 외국인 하면 무조건 불법체류자라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이들에겐 언제나 마음의 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합법 체류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이지만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 이들에겐 국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해 왔다.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단일 민족 국가였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 없는 국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남이 아닌 아내와 남편으로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도 상승 추세이다. 불법 체류 규모도 늘어만 간다. 한국인이 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된 지금 이들의 인권, 기본권 보장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도 이젠 소수민족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 요구는 뜨겁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침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있다.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가끔 나오고 있다. 둘의 두 의견은 다분히 제3세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제1세계 출신의 외국인 자본가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엿보게 하는 측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보다 잘사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우대하고 못사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팔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극이란 L.A 사태 시 재미동포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21세기의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때의 희생양은 아프리카인 이거나 동남아시아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이런 이중적 태

도가 곳곳에 스며있다. 자본가는 우대하고 노동자는 멸시하는, 제1세계 출신은 우대하고 제3세계 출신은 멸시하는 태도 말이다. 소수민족정책은 이 모든 외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계 국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면 이들 영주권자가 그 다음 그 대상이다. 소수민족정책은 이처럼 외국계 국민과 영주권자에 우선하는 국내 정책이다. 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물론 일시 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면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으로는 어떤 집단이 있을까? 먼저 학교가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계 국민이 있다.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혼혈인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혼혈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한국인이지만 혈통의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소수집단이다.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중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는 한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 외국인 전부를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장기 체류하는 사실상 정착 상태의 외국인은 정책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정착도 생겨날 것이다. 이들은 현재 각기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 이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이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1항 (a)는 조약 체결국으로 하여금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근거하여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5조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은 (1)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2)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 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3)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4)기타 민권 특히, ①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②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③국적 취득권 ④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⑤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⑥상속권 ⑦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⑨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⑩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⑦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 ⑪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⑫주거에 대한 권리 ⑬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⑭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⑮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⑯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

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등이다.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협약의 규정과 거리가 있다.

한편, 1992년 12월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소수 민족, 종족, 종교, 언어 집단에 속한 사람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2조에 따르면, 이들은 어떠한 방해나 차별 없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한 종교를 고백하고 수행하며, 고유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임을 결성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국민인 사람을 포함한 같은 집단에 속한 여타 구성원과 자유롭고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외국인, 특히 제3세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차별의 양상은 낮은 임금, 인신 구속, 장시간 근로, 위험한 작업환경 노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발생 시나 질병 시 의료 혜택 소외, 폭행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외국계 국민 또는 학교에 대한 차별도 은근히 하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는 소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 뿐, 기본적인 맥락은 차별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외국계 한국인이나 혼혈인의 경우 국민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 면에서 차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 따돌림 현상은 법률 이전의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조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정이지만, 외국인도 이들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도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평등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본권, 예를 들어 신체의 안전과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권 가운데 일부, 예를 들어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 이처럼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장을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것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국제협약,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외국계 한국인은 국민이므로 당연히,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국민에 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인간적 생활 내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 그리고 헌법 규정에 근거할 경우 외국계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해주어야 할 서비스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사회복지는 물론 참정권까지 가능한 보장을 해주어야 하며, 민족교육은 물론 민족정체성 유지도 지원 또는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정부는 국제협약과 헌법이 규정한 외국인 보호와 지원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계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전반에 대한 차별상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나라는 이민 송출 국가로서 적지 않은 이민을 내보낸 경험이 있다. 아직도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한국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현지 정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인권 상황에 우리 정부와 사회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채 해외생활을 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재외국민이 아닌 현지 국적 동포의 경우에도 동포애적 관점에서 그들의 인권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민족정체성 유지에도 적지 않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과 관련하여서는 정책, 곧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외국인 또는 외국계 한국인에 관한 정책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계 한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무관심한 것은 너무 이기적인 접근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소수민족정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소수민족정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기본 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조항 그리고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는 국제 협약과 선언에 기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기초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소수민족기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이들에 관한 별도의 보호 지원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헌법 규정과 국제협약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헌법과 국제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 커진다.

소수민족기본법의 제정한 경우 법안의 주요 내용은 (1)목적 (2)소수민족의 개념 (3)법 적용 대상 : 외국계 한국인과 외국인 (4)국가의 책무 (5)기본권 보장 (6)사회보장 (7)민족정체성 보장과 지원 (8)민족교육 보장과 지원 (9)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보장과 지원 (10)참정권 보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1

탈북 주민 분야

독고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발제문에서는 한국내의 화교나 외국계 한국인, 또 외국인의 인권 상황에 주목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소수민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소수민족기본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 토론자가 담당해야 할 탈북자의 문제는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제문의 논지를 좀 더 확장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로 이주한 소수 집단의 인권과 적응에 대한 관심'이라는 비슷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탈북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4월 16일 국가원호처에서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남한 정부의 재정 상태, 대북 자신감 정도, 탈북 이주자의 수, 그리고 탈북 주민에 대한 활용 가치의 중요성 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62.4.16- 1978.12.31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특별 원호법(보훈 차원)

1979.1.1- 1993.12.10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체제선전 차원)

1993.12.11- 1996.7.13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 (사회복지차원)

1997.7.14 -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통일대비차원)

용어 측면에서도 '귀순 용사', '귀순 동포', '귀순자',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탈북 주민' 등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현재 매우 다양하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냉전 시대에는 자유를 위해 사선을 넘어 온 용감한 귀순 용사로 지칭되었으나,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정치적 지위도 낮아짐에 따라 현재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가치 배제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탈북 주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 이제 8-9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정부와民間 부문 모두 많은 일을 해 왔다. 실제로 조사 과정이나 적응 교육 등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탈북 주민의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또는 관리 측면의 부담이 누증되고 있다. 또한 탈북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자원봉사자의 훈련 수준, 탈북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관심, 적응 교육의 체계 등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또한 탈북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적응 교육의 체계를 갖추는 등, 하드 웨어를 갖추어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내용을 담는 일이 동시에 중요해졌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탈북 주민과 남한 주민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탈북 주민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적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고, 그러한 구상 속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남한 주민과 탈북 주민 개개인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몫일 수만은 없다. 정부나 민간 부문, 그리고 남한 주민과 탈북 주민 모두가 스스로 힘을 내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토론 2

이주노동자 분야

박 천 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KIN이 주최한 2002년 10월 19일 '소수민족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기본방향'(이종훈, 국회정치담당연구관, 정치학 박사)에 대한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 발표내용입니다.

본 심포지엄의 목표를 1) 거주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소수민족 정책 검토 2) 재외동포법 정책제시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국내소수민족정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국내소수민족 정책'이 본 심포지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소수민족 기본법 주요 내용에 목적, 소수민족 개념, 법적용 대상, 국가의 책무, 기본권 보장, 사회보장, 민족정체성 보장과 지원, 민족교육보장과 지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보장과 지원, 참정권보장 등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소수민족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목표의 적절성

필자는 경제목적, 교육목적 등의 국제인구 이동은 세계적 흐름이며 통제 위주 인구이동 억제책은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히 단일국가 한국도 이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자나라 사람의 경우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이 상당부분 관철되고 있으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세계화란 관점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국제적 노동이동문제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권리 지키기는 법과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기본법의 적용대상

한국에서 누구를 소수민족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는 소수민족기본법 적용대상을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계 국민 (2) 영주권제도

도입후 영주권자 (3) 장기 체류 외국인 (4) 일시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분하면서 화교, 외국계 국민(국제결혼후 국적 취득자), 혼혈인(이중정체성), 장기체류 외국인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본법의 대상을 체류신분, 거주기간 등을 중심으로 규정 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체류신분이 불법체류인 경우 5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문제, 이들 자녀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자녀라 할지라도 이들에 초등학교 취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등 학교 이상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본법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단기 합법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국내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이나 거주기간으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문제는 각각으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제노동이동이 강제화,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비준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안이 소수민족기본법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3. 민족정체성 보장과 지원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및 소수자 등을 위한 정부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난민을 위한 임시 체류시설 및 지원조차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사회문화 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및 시설지원 등에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참정권의 문제

참정권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주의 원칙에 의하여 소수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본 등지에서 외국인 주민자치법 등을 통한 참정권문제가 사회운동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문제는 예민하여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할당제도 등을 통하여 중요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정권의 문제는 작은 실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위원회' 등을 두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안산시 원곡동에서는 초보단계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노동자 및 국제결혼 등을 통한 합법체류자 6명을 명예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4일에는 국경없는마을 원곡동 발전 주민토론회를 외

국인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벌이기도 합니다.

5. 국제연대문제

소수자 문제는 필자가 지적한대로 세계인권선언 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2조, 5조, 유엔총회의 소수민족, 종족, 종교, 언어 집단에 속한 사람의 권리에 관한 선언 2조, 헌법11조, 12조 그리고 아직 비준단계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수자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이고 이미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UN 등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한국은 UN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국내단체들도 국제단체(NGO, GO) 등과 연대하여 국내에서 소수민족관련법이 국제기준(UN)에 적합한 기준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엔과 소수자 인권관계를 보면 유엔총회에는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 내에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가 설치 되어있는데 1947년 53개국 대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947년 인권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이때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매년 제네바에서 4주간 회기로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 보호 및 차별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 3

재한화교 분야

양 필승 (엠차이나타운 추진위원장)

이종훈 박사님이 발제하신 소수민족 기본법 제정은 지난날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정주의 국인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수용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실용적인 방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이상을 우리 사회가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본문 2페이지에서 영주권제도에 관해 언급하신 부분에 새로운 변화 상황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영주권제도는 이미 법개정이 끝나고 이미 법으로서 효력을 지난 5월부터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애초 추진할 때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으나, 지금은 그 결과를 언론이 주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한 게으름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의원입법에 의한 영주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법무부와 타협하여 법령개정으로 일단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2002년 4월 18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년 4월 27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영주권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맺기 위해, 민변 등의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2000년 경부터 법령 검토 및 특별법을 성안했으며, 한성화교협회는 물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김대통령과 이종재 등을 포함한 민주당과 한나라 등의 지지를 확보하고,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등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영주(F-5) 자격을 신설하고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는 더 이상 비자를 갱신할 필요 없는 영주체류의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개정령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여 상당수의 외국인, 특히 화교들이 더 이상 법적 지위 불안으로 말미암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영주권의 법제화 내지는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끄럽게도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의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아이엠프 위기 이전, 화교자본의 유치를 위해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라는 불명예 아닌 불명예를 셋자는 글을 기고한 이래, 차이나타운 건설에 앞장 서게 됐습니다. 마침내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처음에는 뚝섬, 그리고 서울시의 권유 아래 상암동, 그리고 결국 경기도와 고양시의 유치에 의해 일산 호수공원 옆 국제전

시장 부대 시설 부지에 차이나타운을 추진하게 되어, 금년 4월 고양시와 일산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로 MOA를 체결하고, 2만 3천 평의 토지에 차이나타운을 내년 초 경에 착공하는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이미 사이버 상으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Mchinatown.com이라는 중국어 사이트를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이른바 한류의 전파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영주권 제도의 확립과 차이나타운 건립은 결국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를 구체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영주권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세계화를, 차이나타운 내의 일상 생활을 통해 우리 사회 개개인의 내면의 세계화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자의 말로 저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화이부동, 즉 조화하면서 같이 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다양성의 원칙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정대철 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장기간의 거주를 통하여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과 유대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활동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이 다수 있는 바, 지금까지는 이들에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시체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왔음.

지구촌이 하나로 결합하여 가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직접 국제법상의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인권법적인 차원에서도 시정하여야 할 문제임.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위개선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 함.

주요골자

가. 이 법은 장기체류 외국인 등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과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장기체류외국인 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자를 말함(안 제2조).

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신청한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영주권취득신청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마.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속에 대

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7조제1항)

바.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신청을 할 때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한 때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함(안 제7조제2항).

사.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음(안 제12조제2항).

아.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3조).

자.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 있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주권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영주권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안 제16조)

카. 영주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음(안 제18조).

타. 영주권자는 국내의 각급 학교에 취학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안 제19조).

법률 제 호

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과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기체류외국인 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자를 말한다.

제3조(상호주의)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영주권의 부여 등) ①법무부장관은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영주권취득신청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영주권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장기체류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영주권 취득의 요건) ①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것

2.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속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아닐 것

②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신청을 할 때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한 때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영주권의 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주권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심사기준 그 밖에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영주권등록증 및 등록원부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영주권등록증을 체류지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장을 경유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류지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개인별·세대별 영주권등록원부 및 세대별 영주권등록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등록원부에는 영주권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주소·영주권자의 여권번호·여권발급일자 및 여권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주권등록증의 발급절차·발급수수료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주권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영주권등록증의 재발급) 영주권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그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그 등록증을 멀실·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영주권의 소멸과 등록증의 반납) ①영주권은 영주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1.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이 영구 출국한 경우

2. 영주권자의 사망

3. 영주권자의 영주권포기

②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③영주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퇴거의 배제 등)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민등록증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주권등록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영주권자의 체류지변경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출입국) 영주권자는 출입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16조(부동산 거래 등) 영주권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거래 등) ①영주권자는 예금, 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영주권자는 금융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어음법과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의료보험, 국민연금) ①영주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영주권자는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교육) 영주권자는 국내의 각급 학교에 취학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20조(납세의 의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주권자가 1998년 6월 25일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4호 통일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용·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리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리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리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나이·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리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6조 (북한리탈주민대책협의회) ①북한리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리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2.28>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1999.12.28>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호신청등) ①북한리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립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제8조 (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28>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리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리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제15조 (사회적용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16조 (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17조 (취업보호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업보호대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을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28]

제17조의3 (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영농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8조 (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취적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1999.12.28, 1999.12.28>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21조 (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거주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2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24조 (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25조 (의료급여<개정 2001.5.24>)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7조 (보호의 변경)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28>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리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29조 (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불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 (북한리탈주민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리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9.12.28>

1. 북한리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리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리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32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12.28>

제33조 (별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5259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리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리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현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리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56호, 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년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참고자료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제안이유 및 의의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체계는 제한된 업종의 사업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로 하였다.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연수취업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취업 목적의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취업이라는 탈법적인 외관으로 불합리하게 규율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어, 일단 고용할 자격을 가지게 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악화·강제근로를 시키고, 이 때문에 사업장 이탈이 일어나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일단 취업할 자격을 얻게 된 이후에는 사업장 선택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가능 업종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허가를 부여하여 일단 국내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정해진 업종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노동부에 등록한 사업장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동시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수성(귀국하는 시점에서 금품청산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의무 등도 규정하고자 하였다.

주요골자

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부칙 제4조 제1항에서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전문기술직종 등에 관하여는 그대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됨을 따로 정하였다.

나.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년도 인력도입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 도입의 기준이 되는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고시하고

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그 결과를 고시하는 최저임금법의 체계를 따른 것이며, 이 고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제3, 4조).

다. 노동허가의 기간에 관해서는 최초 허가는 2년으로 하고 1년씩 3회에 한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갱신시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신규허가보다 우선되고 취소 사유가 없으면 갱신되도록 법으로 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5년 동안 취업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라. 일반 노동허가를 받아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업종 제한 없는 장기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ILO 97호 협약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부여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국적법의 일반귀화의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도 5년인 것을 고려하였으며, 영주 노동체류 자격 부여 여부는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인정 문제 등 이민 정책 전반의 고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7조).

마. 노동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허가제의 이념상 외국인력 도입 상대 국가('인력 송출국')는 일정한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간 인력도입협정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현지의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거나(현지 노동허가)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노동부에 허가를 신청 한다. 현지 노동허가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동허가공무원을 파견한다(제8조).

바. 현지 교육은 또 하나의 송출비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지 교육을 노동허가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 구사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국 후 교육은 정부의 비용으로 행하되 그 내용에 노동법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사. 건강진단 현지 건강진단과 입국 후 건강진단으로 나누고 현지 건강진단은 현지 노동 허가의 조건이 되며, 입국 후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한다(제10조).

아.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인력도입계획에서 정한 업종(통계청 고시에 의한 산업 소분류에 의하는 것이 적절함)에 속한 사업장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공 알선기관을 통해 이를 사업장 중에서 알선하도록 한다(제11조)

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사회보장관계법 적용 및 차별금지,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노동부장관은 귀국·강제퇴거시 금품청산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제15 내지 20조), 일단 적법한 취업 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차.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규정하였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을 삭제하여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함을 명백히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대한민국 내 고용절차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적정한 활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산업기술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 수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 중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차관과 재정경제부차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업종별 도입의원, 도입기간

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가능 업종, 사업장 규모, 취업기간
 3.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국인력 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정책위원회가 공표한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그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② 노동부장관은 고충처리위원회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외국인력의 도입

제6조 [일반노동허가] ①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정한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일반노동허가를 부여한다.

②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그 허가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장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노동허가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당해 년도의 외국인력 도입계획, 국민경제 상황, 당해 근로자의 취업 경력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신청인을 신규 허가 신청인보다 우선하며, 제8조의 노동허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의 노동허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허가공무원을 재외공관등에 주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일반노동허가의 기준, 절차, 갱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노동허가] ① 일반노동허가를 받고 중단 없이 5년 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당해 년도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비롯한 국내 경제사정,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노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별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6조 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5년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③ 특별노동허가의 기준, 절차, 갱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노동허가의 취소 및 출국준비기간]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여 취업한 자
3.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국내에서 취업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명된 자

② 전2조의 규정에 기한 노동허가의 기간 연장이 거부되거나 제1항에 의하여 노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준비를 위하여 최장 3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노동허가의 취소 및 출국준비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①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인력 송출국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1항의 현지 한국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그 비용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후 작업에 배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어교육 및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교육에는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의 해설, 체류 및 고용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교육기간 동안 숙식 기타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력도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입국 전 현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인력송출국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2항의 현지 건강진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취소하고 인력송출국으로의 송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강진단의 내용, 진단방법, 진단기관 지정 및 송출국으로의 송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고용사업장

제11조 [외국인고용사업장 등록등] ① 외국인력도입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외국인고용사업장 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 사용자는 사업의 현황, 고용 희망 인원, 대략적인 근로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현황 및 내국인 고용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신고 사항의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알선하기 위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고용사업장 등록의 기준 등 사업장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장의 알선]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도입계획과 노동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

인근로자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장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으로 하여, 제1항의 사업장 알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법 제3장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를 할 수 없다.

④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알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외국인 고용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용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에 대한 교육] ①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외국인근로자 출신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제15조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6조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④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17조 [사업장 이동의 보장]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그 허가의 내용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장 중 제11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수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 한다.

제18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①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노동허가 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할 때에는 임금 등 금품을 귀국 전에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품청산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귀국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출국시 금품청산, 인권보장 및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강제퇴거시의 조치] ①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근로계약에 기초한 지위와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도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2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영리 목적으로 중개, 알선, 파견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를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자
5.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방해한 자
6.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1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소명·신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2조 [벌칙] 노동허가에서 정한 업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의 정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자 중 출국희망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출국희망자에 대하여도 이 법 제18조에 의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④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및 출국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산업연수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에 관하여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노동허가를 부여한다.

제4조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이 법 제2, 3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3, 같은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의 규정은 삭제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항에 기한 별표 1의 체류 자격에, 이 법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허가기간과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준비기간 동안의 체류자격 및 그 초청 가족의 체류자격·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알림]

참가자 모집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KIS의 목적은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이상 6개국 거주 재외동포들은 직접 초청, 소수민족(혹은 장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동포(혹은 재외국민) 정책을 비교·정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재외동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23~25일 2박3일간 열리는 KIS는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참가자들은 각국 소수민족 및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각국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한국정부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느끼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각국에서 온 재외동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습니다.

◇ 세부행사

	11월 23일(토)	11월 24일(일)	11월 25일(월)
11시		<제2마당> 독일- 일본 소수민족 · 재외동포 정책	<제5마당> 한국 재외동포 정책 비판적 고찰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1시			
2시		제3마당 미국- 브라질 소수민족 · 재외동포 정책	<닫는 마당> 선언문 채택
3시			
4시			
5시	<여는 마당> 참가자인사/KIN · KIS 소개 문화공연	<제4마당> 소수민족 · 재외동포 정책 종합토론	
6시		저녁식사	저녁식사
7시			
8시	<제1마당> 러시아- 중국 소수민족 · 재외동포 정책	선언문 초안 검토	

◇ 각국 재외동포 발표자 및 토론자

미국: 김대영 (메릴랜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본: 송승재 (재일한인청년연합회 공동대표)

러시아: 최인나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 한국어 한국문학과 전임강사)

중국: 양옥금 (연변대학교 민족학 교수)

독일: 신효진 (kunste 베를린 대학교 음악대학원생)

최영숙: (한인활동가)

브라질: 김범진(브라질한인회 활동가)

◇ 일시: 2002년 11월 23일(토)~25일(월)

◇ 장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 (4층)

◇ 참가비

전일참가 : 2만원/ 부분참가 : 1만5천원/ KIN 회원 : 1만원

식사 및 자료집 제공

◇ 참가문의 : KIS 추진위 준희 (017-284-9860/rosalux@hanmail.net)

<제3부>

KIS 추진활동 자료 모음

- 의제개발 질문지

- 수령증 양식

- 초청 리플렛

- 초청장 등 각종 공문 및 이메일 공지 문안

- 보도자료 및 오마이뉴스 생활광고 문안

- 신문 기사

- 행사 사진